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

의안 번호	관련 2645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5년 6월 19일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제안이유

2025년 6월 19일 제33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『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해 혼인신고일을 제외한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존 신혼부부와 의 형평성 문제를 예방하고, 정책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시행과 동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번안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부칙 안 제2조의 신혼부부 결혼·살림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를 삭제하고자 함(안 부칙 제2조).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

2025년 6월 19일 제33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『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일부를 다음과 같이 번안한다.

부칙 안 제2조를 삭제한다.

번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번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8. (생 략)</p> <p>9. “1인 자영업자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</p> <p>가.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“1인 자영업자”</p> <p>나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“노무제공자” 및 “플랫폼 종사자”</p> <p>다. 「예술인복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“예술인”으로 「예술인복지법」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,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</p> <p>라. 「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“프리랜서”</p> <p>마. (생 략)</p> <p>제4조(결혼·임신·출산 지원) ① ~ ⑤ (생 략)</p> <p>⑥ 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</p> <p>제4조의2(출생축하용품 지원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예정일 전 50일부터 출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 단, 시장은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뜻은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----- -----</p> <p>가.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95조의2제1항제2호 -----</p> <p>나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91조의15-----“노무제공자” 및 “플랫폼 종사자”</p> <p>다.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“예술인”으로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4조의4----- ----- -----</p> <p>라. 「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“프리랜서”</p> <p>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결혼·임신·출산 지원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-----.</p> <p>제4조의2(출생축하용품 지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	<p>제2조(정의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8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9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가.(개정안과 같음)</p> <p>나.(개정안과 같음)</p> <p>다.(개정안과 같음)</p> <p>라.(개정안과 같음)</p> <p>마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4조(결혼·임신·출산 지원) ① ~ ⑤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⑥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4조의2(출생축하용품 지원) 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
<p>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20조에 따른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시 특성에 맞는 저출산 중장기계획(이하 “중장기계획“이라 한다)을 수립해야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-----</p> <p>서울특별시 ----저출산 중장기계획(이하 “중장기계획”이라 한다)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신혼부부 결혼·살림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)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9의 신설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부터 적용한다.</p>	<p>과 같음)</p> <p>②·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u><삭제></u></p>
---	---	---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가목 중 “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95조의2제1항제2호”를 “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95조의2제1항제2호”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91조의15”를 “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91조의15”, ““노무제공자“ 및 “플랫폼 종사자“”를 ““노무제공자” 및 “플랫폼 종사자””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「예술인복지법」 제2조제2호”를 “「예술인 복지법」 제2조제2호”로, “으로 「예술인복지법」 제4조의4”를 “으로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4조의4”로 하며, 같은 호 라목 중 “「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”를 “「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”로 한다.

제4조제6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제4조의2제4항제2호 중 “(「전자정부법」 제38조제1항”을 “「전자정

부법」 제38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별지 제2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2호서식”으로, “별지 제3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3호서식”으로, “별지 제4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4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4조의7제1항 중 “시에”를 “서울특별시에”로, “자가”를 “사람이”로, “서울시”를 각각 “서울특별시”로 한다.

제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9(신혼부부 결혼·살림비용 지원) ① 시장은 결혼·살림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결혼·살림비용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신혼부부 결혼·살림비용 지원 관련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8조제1항 중 “시장은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은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시”를 “서울특별시”로, “저출산 중장기계획(이하 “중장기계획“이라 한다)”을 “저출산 중장기계획(이하 “중장기계획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